

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의년월일 : 2018. 12. 11.

제 의 자 : 구미시의회의장

□ 제안이유

- 구미시의회 마주희 의원이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사직(2018.10.31)함에 따라
-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중 1인을 제8대 의회(전반기)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함.

□ 선임대상 의원

소 속	성 명	비 고
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	신 문 식	

※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임

□ 관련법규

지방자치법 제56조 (위원회의 설치)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(상임위원회 위원) ①의원은 하나의 위원(이하 "상임 위원"이라 한다)이 된다. 다만,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.

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.

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(위원의 선임)

제9조(위원의 선임) ①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②특별위원회의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.